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88
----------	-------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배준영·김용태·한지아  
김성원·송석준·김기웅  
서명옥·권영진·곽규택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서는 제한의 목적, 시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 등으로 인해 주간 시간대에는 출·입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어민들의 조업시간이 급감함에 따라 어민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

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한 어민 생계유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② (생    략)  <u>&lt;신    설&gt;</u></p> <p>③ (생    략)</p>	<p>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p>